

김 제 여 중 교 육 통 신

김제시 중앙로 137 (우)54379 ☎교무실 546-4832 FAX 546-4835 http://www.gimjegirl.ms.kr/ 제2020 - 호 발행일 2020, 9, 21.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교육을 만듭니다. 교사가 흔들리면 학생도 흔들립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양질의 교육을 만들고, 양질의 교육은 건강한 인재를 만듭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폭행, 상해(교원지위법제15조 제1항 제1호)

- ①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경우
- ② 큰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교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협박(교원지위법제15조 제1항 제1호)

- ① 학교폭력 은폐사실을 알려 피해 교원을 징계받게 하겠다 라고 말한 경우
- ② 위험한 물건을 피해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한 경우



명예훼손(교원지위법제15조 제1항 제1호

① 다른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돈을 받았다"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교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모욕(교원지위법제15조 제1항 제1호)

- ①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 ② 교사의 신체적 특징을 지칭하며 경멸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 ③ 수업태도를 바로 하라는 교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올려 보인 경우

손괴(교원지위법제15조 제1항 제1호)

- ① 수업 중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 ② 출석부, 교사의 업무수첩 등을 뜯어내어 훼손하거나 감추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성범죄(교원지위법제15조 제1항 제2호)

- ① 수업 중 교원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한 경우
- ②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따른 불법정보 유통(교원지위법제15조 제1항 제3호)

- 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 학대하고, 이를 따지는 학부모에 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게시한 경우
- ②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새벽시간을 포함한 수 일 동안 "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교사의) 자손들이 장래 불행할 것이다"라는 등의 저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 십여 차례 보내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교원지위법제15조 제1항 제4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①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며,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 관련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성희롱 행위(교원지위법제15조 제1항 제4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 ① 수업시간 중 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
- ② 성적인 물건이나 야한 사진을 교사가 볼 수 있도록 교탁 위에 놓거나 교사의 동선상에 떨어뜨려 놓는 경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① 체육교사에게 '수업시간에 야외 체육활동을 하지 말고 자습을 시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② 시험 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시험범위를 줄이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라며 반복적으로 요구·간섭하는 경우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면 안되는 이유 ☆

1.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침해

Ⅱ. 학생들의 인성에 위협

Ⅲ.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

◎ 이럴때는 이렇게! ◎

- Q. 제 자녀가 학교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절차 및 출결, 그리고 보상 관계에 대하여 담임 선생님에게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 A. 학생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다쳐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다가 목소리가 커져 선생님과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질문을 할 때에는 먼저 아이에게 연락을 받은 즉시 하시는 것 보다, 좀 진정을 하신 뒤에 연락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업무시간 중에 학교 대표전화를 통하여 전화로 상담을 하시거나, 방문 약속을 하고 기일을 지정하여 상담하시는 것 이 좋습니다. 또한, 유치원 및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시,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항목 부분 및 "공제급여지급기준"의 규정에 의한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학교와 상의하셔서 안내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 Q. 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학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반에 대한 문의와 저희 자녀도 피해사실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해 담임 선생님 혹은 학교폭력업무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A. 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하다보면학교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무조건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간의 다툼과 폭력 사건에 대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통하여 사안에 대해 최선의 노력 을 다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그렇기에 학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보호자의견서 및 자녀분 의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셔서 사안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그 리고 피해학생 학부모님과의 원만한 화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Q. 저희 자녀가 작년과 다르게 성적이 무척 낮게 나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고 싶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 야 할까요?
- A. 기대치보다 낮은 성적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기본적으로 담임선생님 혹은 교과선생님의 고유한 업무영역이며, 또한 담임 선생님 혹은 교과 선생님은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할 때 상당한 고민을 거듭합니다. 이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성적에 대한 안내와 동시에 정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일 학부모님께서 직접 자녀의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신 경우, 학교의 안내를 받아 공식적인 성적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을 하신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의견을 말씀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2020. 9. 21.

김 제 여 자 중 학 교 장